

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1. 27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1. 27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83호)
- 상 정 : 2007. 12. 05.(제11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세무과장 정대성)

가. 제안이유

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이 사천시세 조례로 정해져 있어 삭제하고 사천시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(안 제30조)
 - 사천시세 조례에서 사천시세 감면조례로 이관

다. 관계법령

- 「지방세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이 일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, 「사천시세 감면 조례」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을 검토한 바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